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21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75	한병도의원	2024. 6. 11.	2024. 7. 16.
	879	김예지의원	2024. 6. 24.	2024. 8. 20.
	1313	김예지의원	2024. 7. 2.	2024. 8. 20.

-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 8. 23.)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8. 26.) 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8. 26.)비용추계 생략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 3항,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90조제3항).
- 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를 포함함(안 제59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제90조제3항제3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
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 등) ①・② (생 략) 보급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 (3) ----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 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 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 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 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 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 여서는----. 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 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 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 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 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 저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 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 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 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 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 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 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

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 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 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 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이공호기관

2. ~ 10. (생 략) <u><신 설></u>

<신 설>

,
1
<u>제58조의 장애인복지</u>
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
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장
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u>쉼터</u>
2. ~ 10. (현행과 같음)
11.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 설>

- ② ~ ③ (생 략) 제90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 7. (생략)

④ (생 략)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
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
의 광역이동지원센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u>
1.•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3의2. ~ 7. (현행과 같음)
0 12. I. (U 0 1 E D)

④ (현행과 같음)